

第303回國會 政治改革特別委員會會議錄 第 8 號
(定期會)

國會事務處

日 時 2011年10月18日(火)

場 所 特別委員會會議室(議員會館 101號)

議事日程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審査된案件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1

(14시50분 개의)

○위원장 이경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기국회 중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류 중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의견 중 재외선거 관련 사항을 심사한 결과 다음 내용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지역의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거소신고인 명부에 올라 있는 영주권자에 한하여 선거권을 부여하고, 국내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외부재자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위 사항 외에 우편등록 등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방법 확대, 투표시간의 탄력적 연장, 공관 외 추가·순회 투표소 설치 및 우편투표 도입 등에 관해서도 심사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소위원회에서 입안하여 보고한 법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김정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위원장 이경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법안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 김정훈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직선거관계법 심사소위원회 김정훈 소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정훈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원장 김정훈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직선거법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7일 소위 계

○김정훈 위원 어제 저희들 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7개 항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재외국민들께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편등록, 우편투표에 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쨌든 재외국민들께 투표권, 선거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재외국민들에게 투표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이 참여하실 수 있게 우편투표를 또 우편등록까지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개진했습니다마는 어제 민주당이 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만 어제 나온 의견들 중에서도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는 시간상 좀 촉박하기 때문에 우편투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 때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선에서는 우편투표, 우편등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자 하는 여야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간 제약상, 11월 13일 날 재외국민 등록 신청을 받기 때문에 오늘 국내 거소신고 이것을 통과 안 시키면 적용이 안 되니까 오늘은 비록 1건만 처리한다 하더라도 추후에 우편등록이라든지, 투표시간 탄력적 연장에 대해서도 어제 민주당 쪽에서도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할 수가 있다 하는 의견이 개진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향후, 국회의원 선거는 시간상 촉박해서 논의가 더 안 된다 하더라도 향후 대선을 대비해서 우리 정개특위에서 계속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박기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기춘 위원 박기춘 위원입니다.

민주당의 입장도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면 민주당이 마치 재외국민들이 투표함에 있어서 편리성이라든지 많은 재외국민들이 투표하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우편투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염려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 정당성이라든지 부정선거 문제에 대한 논란, 그것이 자명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 자체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걱정하고 지금으로서는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 맞지요? 선관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지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제도에 대한 장단점은 다 있다고 보겠습니다.

○박기춘 위원 지금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시기적으로? 더 토론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사무총장님?

그런 의견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저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 이 법이 또 다시 재론되고, 지금 오늘 통과시키는 법만 하더라도 우리가 소위에서 협의된 것을 전체회의에 가져왔다가 다시 또 소위에 갔다 그게 한 획, 한 점도 안 고쳐지고 다시 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 시행하는 거다 보니까 보다 심도 있고 명확하고 그야말로 재외국민들을 위해서 편리를 제공하고 많은 재외국민들이 참여해서 이 법의 취지에, 정신에 맞는 그런 법을 만들어 내기 위함으로서의 걱정이지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소위에 참석했던 우리 조정태 위원이 또 발언권 얻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성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의결을 먼저 해 주시지요.

○위원장 이경재 먼저 의결할까요? 아니, 문제가 제기되면 의결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얘기를 들어야지요.

○김성곤 위원 지금 논의되는 것은 다른 사항이니까요.

○위원장 이경재 아, 다른 사항이니까요.

이 부분에 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마련하여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계시면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김정훈 간사 위원님 말씀 고맙고

요. 어저께도 소위에서도 우편투표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우편투표, 인터넷투표의 문제는 작년부터 꾸준히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에 지금 한나라당 대표이신 홍준표 의원도 사실 미국 LA에 오셔 가지고 투표의 편리성보다는 공정성이 일단 첫 선거에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편투표 도입은 시기상조다라고 분명히 그때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 당의 김영진 의원께서는 우편투표를 도입하자는 법안을 내놓고 작년도 LA에서 또 기자회견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편투표나 인터넷투표는 사실 지금 여야로 갈려 있다기보다는 의원들 사이에 좀 입장이 갈려 있는 것 같고, 똑같은 원리로 우편등록도 투표의 공정성이나 편리성이나 이런 차원에서 지금 논의가 되는데 저희 당에서도 지금 우편등록을 도입하자는 그런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일부 언론에 우리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한나라당에서는 해 주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가는 것은 이것은 정확한 팩트가 아니고 저희는 분명히, 선관위원회에서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 선거인만큼 투표든 등록이든 일단은 본인 확인을 하고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선관위 입장에 동의를 했던 것이고, 일본도 보면 처음에는 우편투표로 했다가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다음 선거 때부터 사실 우편…… 처음에는 공관투표로 했다가 그다음다음 선거 때부터인가 우편투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 선거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한 다음에 다음 선거부터는 좀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저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마치, 박기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소극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로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러나 저희도 앞으로 재외국민들의 투표의 편리성 확대를 위해서 공정성과 함께 편리성이 보장되도록 점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김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조경태 위원 제가 어제 소위에 있었기 때문에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회투표소 설치 문제에 대해서 별말씀을 안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민주당이 반대해서, 이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한나라당 위원님들도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재외동포라고 하면, 재외국민이라고 하면 미국에 계시는 분들만 재외국민이 아니지요. 전 세계에 있는 국민들이 다 재외국민입니다, 재외동포이고.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걸림돌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중국의 경우는 어떻게 형평성 있게 정리를 해 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땅한, 지금 현재로서의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면 그것은 형평성에서 위반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한계를 여야 위원들이 다 같이 느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아까 김정훈 위원께서, 지금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디 가셨네요.

문제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편투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편투표 도입이 어떨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충분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었는데 현재로서도 보면, 선관위나 각종 문서를 보면 공관투표만 하는 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우편투표를 하는 나라는 공관투표에 비해서 훨씬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도 만약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점진적으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방안은 차츰차츰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여야 위원님들이 다 공감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투표시간의 탄력적 연장이 부분은 거의 합의 도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하지 말자, 선관위에서 제안한 대로 그냥 그 정도로 하자고 했는데 일부 위원, 그것도 한 위원님이 계속해서 동의 못 하겠다 해 가지고 전

체회의로 넘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소위에서 논의되었던 부분은 전반적으로 여야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면서 전체회의에 넘어온 것이지 이것이 마치 민주당의 의견만, 민주당에서만 반대해서 안 됐다 이 의견은 상당히 좀, 듣기에 따라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위에 참석했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다른 분,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민주당 위원들께서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여야 간에 논의됐던 쟁점이 제외선거에 있어서 등록 방법을 확대하자, 공관의 추가 또는 순회투표소를 설치하자, 우편 또는 인터넷 투표를 도입하자, 투표 시간의 탄력적인 연장을 하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도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다만 하여튼 이 가운데는 공정성 문제에 큰 문제가 없으면서도 일반 국민들에게,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참여하기 좋게끔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하튼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있는 동안에, 차기 총선에는 적용하기 어렵더라도 다음 대통령선거 때부터는 적용할 수 있도록 좀더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통과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 및 심사보고서의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이 내용은 지난번과 똑같은 것이 다시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문장상 이것이 잘못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다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잘 정리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통과와 관련해서 사무총장님, 특별한 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말씀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 등 관련 기관은 이 법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외국민 선거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중 일부 개정 내용을 의결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공

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에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 진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불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법·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에서도 좀 속도를 내주셔서 내년 선거 일정 등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김성곤 김정훈 김혜성 류근찬
박기춘 성윤환 안효대 여상규
이경재 조경태 최규성

○출장 위원(2인)

전현희 진영

○청가 위원(1인)

박준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연호
전문위원 문강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사무총장 이종우

【보고사항】

○위원 사임 및 보임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주성영	조원진	한나라당	2011. 8. 30

○의안 회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金先東 의원 대표 발의)

(2011. 8. 22 金先東·안민석·권영길·홍희덕·이정희·곽정숙·유성엽·강기갑·유원일·김춘진·정동영 의원 발의)

8월 23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운석 의원 대표 발의)

(2011. 9. 6 장운석·이한성·김옥이·안효대·김세연·최병국·배영식·황진하·유정현·김광림·허원제·박대해·홍사덕·장제원·박민식·전여옥·진성호·신지호 의원 발의)

9월 7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 발의)

(2011. 9. 14 윤상현 · 김성수 · 김옥이 · 김태환 · 김혜성 · 손범규 · 신상진 · 안홍준 · 이정현 · 이진복 · 정진섭 · 현기환 의원 발의)

9월 15일 회부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낙균 의원 대표 발의)

(2011. 9. 21 신낙균 · 유선호 · 김유정 · 김상희 · 조배숙 · 송민순 · 추미애 · 김춘진 · 박은수 · 전현희 · 최영희 · 손범규 · 이성남 의원 발의)

9월 21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 발의)

(2011. 9. 22 김세연 · 김학송 · 박민식 · 현기환 · 권영진 · 김태원 · 김무성 · 한기호 · 정갑윤 · 허태열 의원 발의)

9월 26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 발의)

(2011. 10. 11 김성곤 · 유선호 · 박은수 · 신학용 · 김용구 · 이윤석 · 이인기 · 김효석 · 조영택 · 신낙균 · 오제세 의원 발의)

10월 12일 회부됨